

홍수면부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'93. 3. 9
제안자 : 산업위원장

1. 주 문

- 각종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홍수부지 경작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임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.

2. 제안이유

- 충북 관내의 농지개량조합 관할 68개소의 농업용수 저수지 상류 주변에 842호의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200만 m^2 의 홍수부지에 대하여 현행 생산량의 10%선을 받고 있는 임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 (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56조의8) 을 개정하여야 한다.

3. 참고사항

" 없 음 "

洪水敷地 賃借料 賦課 徵收 關係法 改正에 關한 建議文 (案)

國會議長 께
(農林水產部 長官)

새 政府의 公式 出帆과 함께 新 韓國의 建設 그리고 特히 福祉 農村 建設을 爲하여 항상
盡力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온 道民과 함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.

當面하고 있는 農村의 어려운一面을 建議드리고자 합니다.

- 지금 農村은 農產物 輸入開放의 威脅과 더불어 高齡化로 인한 人力不足, 過多한 生產費用等 여러가지 불리한 條件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, 이대로는 도저히 지탱이 어려워 農村을 떠나는가 하면, 營農을 포기하는 等으로 農村이 피폐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
- 悲惜한 農民의 처지를 보다못한 忠北道議會 議員一同은 道民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建議를 드리게 됨을 謹察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저의 忠北道 管内에는 郡單位 農地改良組合 管轄에 68個所의 農業用水用 저수지가 施設되어 있습니다.

이 저수지 上流 周邊에는 842戶의 農家가 通常 實際 水浸되지 않는 部分의 約 200萬
m²의 洪水敷地를 管理 機關과 賃貸借 契約하여 耕作하고 있습니다.

○ 事實上 전술한 洪水 敷地에 對하여는 貯水用 水域 目的 以外 天災地變으로 因한 洪水時
를 對備한豫想 水域으로만 管理하는 것이며,

또한 賃借人 大多數가 土地의 前 所有主들임을 참작 再起의 힘이 될 수 있도록 洪水敷地
使用料 賦課 徵収에 관한 關係法 規定中 使用料를 免除할 수 있도록 改正하여 零細한 農
民이 고장에서 定着할 수 있도록 特別한 配慮 있으시기 仰望하옵니다.

1993. 3.

忠清北道議會議員一同